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 12월 1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국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과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함.

II .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9조)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서울특별시마포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변경

나.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1)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 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따른 도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도로명주소는 사업에 의한 경우 외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에 적용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

2)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8조 및 제8조의2)

1)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 구 수입증지로 함.

2)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증지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함

라. 기존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 도로명변경, 도로명시설 설치 등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이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전반)

Ⅲ.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4.2)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변경으로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서울특별시마포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새주소 안내시설”를 “도로명 안내 시설”로 변경 하였고,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결정 및 징수 방법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였으며, 기존 조례 주요 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삭제(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법령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